

○○문화원 갑질행위 등 특별조사 결과

1. 조사개요

- (조사기간) 2018. 1. 30.(화) ~ 2. 1.(목) (3일간)
- (조사자) □□□, □□□
- (조사방법) 실지조사

2. 조사결과

- 무단 결근,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
 -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서 운전기사에게 대기 지시(30~40회 이상), 대사관에 간다고 하면서 근무시간에 수시로 숙소에 있거나, 근무시간에 백화점에서 쇼핑(주 3~4회)
 - ☞ 무단 결근 및 지각, 근무시간 중 수시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
- 외교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
 - ○○기관 초청에 답변을 하지 않는 행위, 공식행사에 불참하거나 임박하여 취소하는 행위
 - ○○기관과의 미팅, 오찬 등에서 식사도중 말없이 가거나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
 - ☞ 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성에서 벗어나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
-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업무처리 및 지시, 감정적 언행 등 관리자로서의 자질 부족

- 원장이 참석해야 하는 언론인터뷰, 미팅 등에 직원을 참석하도록 지시, 늦은 밤 및 주말에도 라인을 통해 계속적으로 업무 지시, 휴직자에게 업무 강요, 타기관 및 직원들과 감정적인 소통(대화) 및 갑작스런 대관일정 취소 등 무책임한 업무처리

- ☞ 공식 행사 및 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자주 불참하는 등 직무대만, 직원에게 주야간에 무작위로 업무지시 및 휴직자에게 업무를 강요하는 등 강압적 행위, 관련 기관과의 잦은 마찰 및 결정사항을 자주 반복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관리능력 부재 및 품위유지 위반

○ 근무시간 중 가족여행 예약 등 사적인 지시

- 항공탑승권, 호텔 예약지시 및 직원에게 선결제 요구, 운전기사에게 가족 여행에 휴가를 내어 운전하도록 요구, 개인 수영장사 및 개인 ○○어 강사 섭외 요구, 개인물품 구매지시
- ☞ 직원에게 개인여행 예약지시 및 선결제 요구, 휴가를 내어 여행에 동행하도록 하여 운전을 요구한 것 자체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적 지시

○ 공용차량 사적 사용

- 공용차량을 백화점 쇼핑, 개인여행 시 공항 픽업 등에 사용하였고, 사적 사용 시에는 차량일지를 기록하지 않도록 기사에게 지시
- ☞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위반,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

3. 조치 계획

- □□□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,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중징계 요구 조치